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18가단24732(본소), 2019가단224171(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청구의 소]

---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성

담당변호사 성진욱, 소혜림, 정재현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이종민, 김문수, 공일규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396,599원과 그 중 35,896,599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2.부터 각 2023.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8,5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9,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도·소매 커피 관련 동네카페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매장 인테리어공사를 체결한 후 그 즈음 공사를 완료하였다.

| 순번 | 진행시기     | 현장명    | 순번 | 진행시기     | 현장명    |
|----|----------|--------|----|----------|--------|
| 1  | 2015. 6. | 부천 여월점 | 2  | 2015. 9. | 부천 중동점 |

|    |           |         |    |          |         |
|----|-----------|---------|----|----------|---------|
| 3  | 2016. 1.  | 부천 약대점  | 4  | 2016. 4. | 도봉구 창동점 |
| 5  | 2016. 8.  | 부천 중2동점 | 6  | 2016. 9. | 은평구 신사점 |
| 7  | 2016. 11. | 부천 상2동점 | 8  | 2017. 2. | 시흥 배곧점  |
| 9  | 2017. 4.  | 부천 심곡점  | 10 | 2017. 9. | 양천구 목동점 |
| 11 | 2018. 2.  | 부천 송내점  | 12 | 2018. 4. | 인천 삼산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비 합계 158,579,000원을 정산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에 부합한다며 제출한 현장별 공사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은 모두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기재내용의 타당성을 수긍한 사실이 없는 점, 원·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점, 원·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를 토대로 피고의 가맹점주의 참여 하에 구체적인 공사내용 및 금액을 추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공사 하자 관련 손해 주장에 관하여

#### 1) 시흥 배곧점, 부천 심곡점

이 법원의 감정인 D, 감정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천 심곡점과 시흥 배곧점 공사에 하자가 있어 부천 심곡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위하여 공사비 11,002,200원, 시흥 배곧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위하여 공사비 3,271,000원, 계단 철거공사를 위하여 13,608,999원, 계단 신설공사를 위하여 43,911,000원, 합계 71,793,199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해당 감정이 원고의 공사완료 후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건축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5,896,599원(= 71,793,199원 x 0.5, 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천 여월점, 부천 중2동점, 부천 상2동점, 양천구 목동점, 부천 송내점

위 점포들에 대하여는 감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행강제금 관련 손해 주장에 관하여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천 중2동점의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가맹점주에게 2017. 1.경 8,106,000원, 2018. 6.경 1,593,000원의 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 피고가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 이행강제금 중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한 9,000,000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적정 책임비율인 50% 상당액인 4,500,000원(= 9,000,000원 x 0.5)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가맹비 면제 관련 손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부천 여월점을 비롯한 7개 점포에 대하여 가맹비

173,000,000원을 면제해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그 중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맹비 면제가 원고의 공사 하자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40,396,599원(= 35,896,599원 + 4,500,000원)과 그 중 35,896,599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금의 지급을 요구한 종기 다음날인 2019. 1. 1.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4. 22.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조중래